

'86.'88文化올림픽

大學博物館特別公開展示計劃案

許 善 道\*

要 目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展示基本計劃</li> <li>2. 豫算計劃</li> <li>3. 施行計劃(推進日程)</li> <li>4. 計劃基本趣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會員校 參加</li> <li>◦ 全會員校 育成</li> </ul> </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豫算確保方案 및 政府次元의 政策的支援 要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學設置基準令上에 大學博物館設置規定還元</li> <li>◦ 大學豫算編成에 있어서 博物館費配定의 行政的 措置(例:圖書確保費)</li> <li>◦ 大學博物館要員의 國內外 研修強化.</li> <li>◦ 追 記</li> </ul> </li> </ol> |
|--|---|

1. 展示基本計劃

가. 原 則

全會員校 博物館이 參與한다.

나. 方 法

- (1) '86.'88文化올림픽 期間中 全會員校 博物館을 一般에게 特別 公開 展示한다.
- (2) 比較的 收藏遺物에 特色이 있는 會員校 博物館은 特別企劃展을 開催한다.

參與形態(展示)別	參加校數	摘 要	
一般特別公開	A 그룹校	12	既存施設 및 收藏遺物이 相對的으로 良好한 大學博物館
	B 그룹校	30	既存施設 및 收藏遺物이 相對的으로 未洽한 大學博物館
特別企劃展	11	收藏遺物에 比較的 特色이 있는 大學博物館	
合 計	53		

※ 別表 1 大學別 展示參加計劃 參照.

2. 豫算計劃

가. 所要豫算

단위:천원

區 分	豫 算 額	算 出
A 그룹校博物館	1,529,040	1個格 127,420×12個校
B 그룹校博物館	4,407,600	1個校 146,920×30個校
特別企劃展校博物館	1,259,170	1個校 114,470×11個校
合 計	7,195,810	總 53個校

- ※ 1. 本豫算額은 '86.'88統合豫算임.
2. 別表 2·3 豫算算出表 參照.

\* 本協會會長, 國民大學校 博物館長(追記 參照)

1984年 5月 現在 韓國大學博物館協會 會員校는 京鄕各地 總 53個校(이外 入會申請校 2個校)인바 施設과 內實이 相對的으로 크고 좋은 會員校는 A그룹으로, 그렇지 못한 會員校는 B그룹으로, 그리고 特殊遺物을 比較的 많이 保有하고 있는 會員校(例, 梨花女子大學校—朝鮮時代 文房具, 高麗大學校—韓國傳統繪畫 등)는 特別企劃展으로 區分 算出하였다. 따라서 本 計劃에서는 모든 會員校의 公開展示를 一定水準 以上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B그룹校에 A그룹校 보다 展示施設 및 遺物의 補充 등에 相對的으로 더 많은 豫算을 策定하였다.

나. 豫算確保方法 및 比率

단위 : 천원. 1개교/그룹전체

區 分	總 豫 算(100%)	自 體 負 擔(60%)	政 府 支 援(40%)
A 그룹校博物館	127,420 / 1,529,040	76,452 / 917,424	50,968 / 611,616
B 그룹校博物館	146,920 / 4,407,600	88,152 / 2,644,560	58,768 / 1,763,040
特別企劃展校博物館	114,770 / 1,259,170	68,862 / 755,502	45,908 / 503,668
合 計	/ 7,195,810	/ 4,317,486	/ 2,878,324

단, 下述 政府의 政策的 配慮가 各 大學에 加해진다면 政府支援 比率을 더 낮출 수도 있음.

3. 施行計劃(推進日程)

가. '86

- 1984. 12. 大學別 施行計劃 樹立 및 報告.
- 1985. 3. 豫算 確保.
- 1985. 6. ~ 7. 展示計劃 樹立 確定(展示品 選定).
- 1985. 8. ~ 12. 展示施設設備 및 展示品 補強.
- 1986. 1. ~ 6. 圖錄 및 其他 弘報物 製作.
- 1986. 7. ~ 8. 展示 作業.
- 1986. 9. 開幕.

나. '88

- 1986. 12. 大學別 施行計劃 樹立 및 報告.
- 1987. 3. 豫算 確保.
- 1987. 6. ~ 7. 展示計劃 樹立 確定(展示品 選定).
- 1987. 8. ~ 12. 展示施設設備 및 展示品 補強.
- 1988. 1. ~ 4. 圖錄 및 其他 弘報物 製作.
- 1988. 5. ~ 7. 展示 作業.
- 1988. 8. 開幕.

※ 단, 上述 豫算案이 下述 政府次元의 政策的 配慮에 依해서 뒤받침되어야만 本 日程대로 推進할 수 있음.

※ 本計劃案은 1984年 4月 17日에 文公報에 提出된 原案에 1984年 5月 現在 基準으로 全員校數(參加校 博物館數) 및 豫算額을 다음과 같이 調整變更 하였음.

- 1984年 春季總會에서 京畿大學이 本協會에 新規로 加入되어 1校 增加.
- 忠北大學校 博物館이 特別企劃展을, 全南大學校 博物館이 A그룹으로 編入을 希望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 當初計劃에서 漏落된 博物館要員의 研修費와 研究員 및 案內員의 傳統文化에 對한 專門教育費를 1個校當 270萬원씩 追加計定하였음.

#### 4. 計劃基本 趣旨

- 이번 文化올림픽 行事는 文化公報部 提示「文化올림픽計劃(案)」에서도 밝혔듯이, 그야말로 “國內 및 在外國民의 文化藝術力量을 最大限으로 開發, 體系의으로 總動員(上記 計劃案 p.8) 하여야 하며, 즉 모두가 同參盡力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構成員中 한 둘만이 아니고 모두가 이 올림픽 文化藝術事業을 통해 각기” 民族史의 大躍進의 體驗으로 昇華(同上 p.5)시켜야 한다.
- 뿐만 아니라 現實的으로 競技開催地가 서울·釜山·光州·大邱·大田이며, 觀光 및 史蹟地가 慶州·濟州·扶餘·公州·淸州·晉州등 全國一圓이고, 觀覽人員이 '86의 경우 參加 外國人단도 約 16萬名, 地方居住 國民參加數 連 150萬名, '88의 경우 參加 外國人 約 38萬名, 地方居住 國民의 連人員은 測定不能 정도(上記計劃案 p.11)로 豫想되고 있다. 따라서 이 많은 人員들이, 例컨대 서울등 6大都市를 轉轉해야 하는 各國選手가, 慶州에서 晉州에 이르는 重要史蹟地를 찾는 觀光客이, 이 機會에 故國의 親知와 山川을 찾는 在外僑胞들이, 또 이 大行事를 觀覽키 위해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우리 國民들이, 언제 어디서 韓國의 바꾸어 말해 우리의 傳統文化에 接해 보고져 하는 心的衝動과 時間的餘裕를 갖게 될런지 모를 일이다. 또 假使 그들이 서울 所在의 國立 및 重要大學博物館에만 모여들고, 그러하도록 誘導한다고 할경우 그들의 몇百分之一도 收容할 수 없음은 너무나 明明白白하다. 그러므로 參加하는 外國인과 故國을 찾는 僑胞들로 하여금 그가 競技하는 곳, 그가 當到한 곳에서 손쉽게 韓國文化 및 韓國人의 優秀性과 그 傳統性(對北韓)을 눈으로 직접 觀覽 體得케 하고, 또 傳統文化에 대한 認識과 理解를 모처럼 많이 動員된 우리 國民들에게 大衆化시키는(上記 計劃案 p.5 및 p.9 參照) 方途는 무어니 해도 現在 全國各地에 고루 分布되어 있고, 또 學生敎育이란 그 第一次的 使命에 비추어 綜合博物館의 性格을 本領으로 하고 있는 各大學의 博物館을 一定水準以上으로 育成하여 —적어도 觀覽後 豫想效果를 減退시키지 않을 水準으로 끌어올려— 널리 公開展示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 또한 政府의 이번 大學博物館特別展示開催方針의 하나가 “大學博物館設置와 擴充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推進”(上記 計劃案 p.40 및 p.51)하는 것인만큼, 在京 몇몇 大學博物館에만 特別企劃展을 開催토록 하여 重點的으로 育成할 경우, 이는 現在 政府次元 重要施策의 하나인 大學施設의 平準化, 特히 地方大學育成이란 基本趣旨에 正面으로 違背될 뿐더러, 나아가 各大學間에 違和感마저 造成할 憂慮가 크다.  
이에 大學博物館協會에서는 文化올림픽 參加라는 大主題를 놓고 여러차례 幹事校會議를 열어 深思熟考 끝에 上記와 같이 「全會員校 參加」, 「全會員校 育成」으로 그 基本方針을 確定하였다.

## 5. 豫算確保方案 및 政府次元의 政策的支援 要請

大學博物館은 특히 1980年代에 들어와 政府當局의 沒理解와 政策的 不一貫性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試鍊과 難關을 겪고 있다. 各大學의 博物館은 8.15解放 以後, 從來 우리나라의 教育이 抽象的 觀念的 方法에 치우치던 弊害를 止揚하고, 實物에 의한 直觀教育의 重要性을 일깨워 그 實效를 건우었다. 한편 8.15解放과 6.25動亂을 겪으면서 全國 各地에서 어지럽게 散逸되고 破壞되던 各種 文化財를 收合 保護하고, 다시 急變하는 社會風土와 日進하는 國土建設에 맞추어 全國坊坊曲曲의 文化遺蹟을 調査·研究하는 등, 그 教育的·文化的·學術的 使命을 다해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政府에서도 일찌기 檀紀 4288(1955年) 8月 4日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1063號, 第10條 9)에 大學에서의 博物館設置를 法制化하고, 1967年 9월에 이르러서는 이를 綜合大學校의 경우 “博物館은 學生 2,000人 未滿까지 450m<sup>2</sup> 以上, 2,000人 以上일 때는 600m<sup>2</sup> 以上으로 하도록” (同年 9月 27日 第3,226號, 第11條 2, 1970年 1月 9日 大統領令 4,511號 및 1970年 12月 27日 大統領令 4,543號 第12條 1) 보다 強化하였으며, 그 具體的 施策의 하나로 學生登錄金에 있어서 圖書館費와 나란히 學生一人當 얼마씩의 博物館費徵收를 許容 勸獎하였다. 政府當局에서는 昨今에 이르러 다시 博物館法制定이 論議되게 되어서도 그 內容中에 大學博物館의 育成을 크게 考慮하고 있는 것으로 傳聞하고 있다.

하지만 1970年代 後半에 들어서는 登錄金抑制 政府施策의 一環으로 博物館費徵收 項目이 削除되고, 1980年代에 들어서는 大學學生定員의 急激한 量的肥大로 因해 大學經營의 重點이 우선 다급한 教室擴充 및 人件費確保 등에 기울어 질 수밖에 없는 與件下에서~더욱더 甚해지는 登錄金凍結로 말미암아~大學博物館은 그 核心인 展示施設(場所)과 遺物收藏(豫算) 및 管理·研究能力(특히 學藝員)의 確保에 있어서 “重要하지만 當장 時急하지는 않다”는 理由로 계속 踏步를 거듭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本協會에서는 1982年 11月 「韓國大學博物館 發展을 위한 協議會」를 開催하여 그 어려운 現實과 問題點 등을 깊이 分析 指摘하고 널리 呼訴하였다(本協會 機關誌 「古文化」 第21輯 參照). 그런데도 政府當局에서는 바로 이 무렵에 어이없게도 大學設置基準令을 고쳐(1982年 12月 31日 大統領令 第10983號 및 1983年 6月 25日 大統領令 第11153號) 政府樹立後 近 30年間 存續되어 오고, 또 그만큼 많은 貢獻을 다한 大學博物館設置運營의 根據를 송두리채 削除해 버렸다(第11條 大學에 設置해야 할 附屬施設을 羅列한 別表 3에 博物館이 漏落되었음).

그러나 이는 以後에도 계속 發效되고 있는 國立學校設置令(1982年 12月 31日 大統領令 11018號 第9號 6과 第11條, 바로 上記 大統領令 10983號와 同年 同月 同日 附) 및 서울大學校設置令(1982年 6月 11日 大統領令 第10835號 第6條)에 博物館設置가 엄연히 規定되어 있고, 또 文教部 示達 「1984學年度 學校法人 및 大學(校) 財政運營指針」(1983年 12月 28日) 中 有形固定財産의 買入支出項(p. 37)에 博物館遺物買入費가 圖書購入費와 나란히 舉示되어 있으며, 다시 모든 中高等學校는 萬

론 國民學校에 이르기까지 郷土館設置를 적극 勸獎하고 있는 事實 등으로 미루어, 分明히 一時的 事務的 錯誤로 밖에는 짐작되지 않는다.

어떻든 이를 根據로 한 一部 大學當局의 너무나도 硬直된 學校行政運用으로 因해 各大學 博物館은 以後 一路 萎縮을 거듭하고 여러가지로 加一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別表 4 大學博物館 關係法規其他 參照.

적게는 당장 '86.'88文化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를 위해서, 크게는 教育上 學術上 더없이 重要하고 또 그같은 使命을 다해온 大學博物館 育成을 위한 方策과 豫算確保方案은 다름아니고, 즉각 事務 錯誤로 一時 잘못되었는 바를 바로 잡아, 大學設置基準令에 모든 四年制大學에 있어서 博物館을 設置運營토록 規定을 還元하고, 이에 根據하여 博物館豫算의 確保를 위해 처음의 趣旨대로 그 行政的 措置를 早速히 復活하는 것이다. 參考로 現在 文教當局의 大學豫算編成基準을 보면 圖書館의 경우는 圖書確保만을 위해서도 學生 1人當 2萬원 以上씩을 計定토록 指示하고 있다. 教育上的 二大資料가 文獻과 實物임은 常識인만큼 博物館의 경우도 이에 準해서 從前과 같이 學生 1人當 얼마씩만 計定토록 措置하면 文化올림픽을 對備한 大學博物館 特別公開展示에 必要한 豫算確保는 無難할 것이다. 가령 學生數가 많은 綜合大學校에서는 1人當 圖書確保費의 3分 1, 學生數가 적은 單科大學에서는 2分 1만 配定하더라도, 綜合大的 경우는 本協會 會長校인 國民大學校로써 例示하면 現在 籍生 6,500餘名이니 年間 約 4,500餘萬원, 單科大的 경우는 監事校인 公州師範大學으로 例示하면 現在 籍生 4,000餘名이니 年間 約 4,000餘萬에 이르므로, 이를 本計劃(案)의 緒頭에서 提示한 A그룹 및 B그룹豫算의 그것과 對比해 보면 能히 首肯이 갈 터이다(이같은 政策的 配慮만 實現된다면 上記 豫算案中 自體負擔과 政府支援要請額의 比率는 좀더 調整될 수도 있을 것임).

그리고 만약에 이같은 措置가 배풀어지지 않는다면 上示한 바 豫算의 龍大함과 現 各大學 博物館의 實情에 비추어 그 어느 大學을 莫論하고 이번 文化올림픽 參加는 거의 不可能할 것이 確實하다.

大學博物館은 文教部 傘下에 있으나, 매우 重要的 文化財를 많이 收藏하고 있는 까닭에 오히려 文化公報部와의 紐帶가 깊고 實質上 그 監督과 支援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事實上的 主務部處인 文化公報部에서 主管部處인 文教部와 適宜 協力하여, 이번 文化올림픽을 계기로 “大學博物館의 設置와 擴充을 誘導한다”(上記 計劃案 p.40 및 p.51)는 基本趣旨를 살리어 위에서 要請한 바 大學設置基準令上的 大學博物館의 位置와 豫算配定上的 原則을 早速 還元 措置해 줄것을 거듭 懇請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이같은 措置가 이루어졌을 때 大學博物館은 政府 내지 學校에서 確固한 基盤을 占하여 後世教育和 民族文化 暢達을 위해 그 施設과 資料(遺物)를 合理的 持續的으로 擴充하는 한편, 특히 國際的 行事に 對備 그 研究力量的 內實을 위해 學藝員의 國內外 研修強化 등, 그야말로 百年 大計를 한걸음 한걸음 着實하게 履行해나갈 것을 分明히 다짐해 마지 않는다.

끝으로 結論삼아 다시 한번 大學博物館의 主務部處格인 文化公報部에 대해 本 韓國大學博物館協會에서는

- 1) 大學設置基準令을 곧바로 還元시켜 四年制大學에서의 博物館設置를 明文化하고, 그리하여 大學內에서의 博物館의 位置와 學藝員의 配置를 制度的으로 明確히 하며,

2) 大學豫算編成에 있어서 博物館費의 確保를 從前과 같이, 또 圖書館費의 경우와 같이 行政上으로 保障하며,

3) 大學博物館의 運營 내지 研究力量을 보다 開放的이며, 國際의 眼目에서 增進시킬 수 있도록 그 要員의 國內外 研修를 한층 積極的으로 支援해 줄 것을 要望하면서, 이런 文化올림픽 行事に 大學博物館의 參與와 그 成功的 結實이 期必코 맺어질 수 있도록 眞心으로 祝願해 마지 않는다.

添附：1. 大學別展示參加 計劃

2. 豫算算出表
3. 豫算算出基準補完表
4. 大學博物館 關係法規 其他

〈別表 1〉 大學別 展示參加 計劃

參加展示別	參加校數	參 加 校 名		備 考
一般特別公開展開催	A 그룹	12	慶北大·國民大·世宗大·淑明女大·延世大·圓光大·全南大·全北大·忠南大·漢陽大·海士·弘益大.	既存施設 및 收藏 遺物이 相對的으로 良好한 大學
	B 그룹	29	江陵大·江原大·京畿大·慶南大·公州教大·公州師大·關東大·啓明大·建國大·大邱大·德成女大·同德女大·馬山大·明知大·木浦大·釜山大·釜山産業大·釜山女大·西江大·成均館大·誠信大·安東大·仁荷大·韓國外國語大·全州教大·濟州大·清州教大·清州大·韓南大·曉星女大.	上記 以外의 大學
特別企劃展開催	11	參加校名	展示主題	比較的 特色 있는 遺物을 많이 收藏한 大學
		慶 熙 大	三國瓦磚展	
		高 麗 大	韓國傳統繪畫展(호랑이中心)	
		檀 國 大	韓國傳統服飾展	
		東 國 大	三國時代佛教文化展	
		東 亞 大	先史文化展	
		서 울 大	青銅器文化展	
		崇 田 大	基督教史料·獨立運動史料展	
		嶺 南 大	新羅文化展	
		陸 士 大	韓國傳統武器展	
梨花女大	朝鮮時代文房具展			
忠 北 大	舊石器文化展			
計	52			

〈別表 2-1〉 豫 算 算 出 表

1. A 그룹

단위:천원

區 分	豫 算 額	算 出	內 容
施設補完備	20,600	○ 陳列櫃補充製作費: 12,300 ○ 環境調和設備費 : 5,800 ○ 保安施設費 : 2,500	○ 大: 6개, 小: 6개, 特殊: 3개. ○ 照明, 溫濕度調節機 設置. ○ 赤·紫外線警報施設 設置.

遺物補強費	54,900	別表 3-2 豫算算出基準 補完表 参照	
展示遺物保存處理費	2,250	45點×5만원 * 基準展示量 450點×10%	○ 復元・修理・保存措置. ○ '86 : 7% . '88 : 3%
展示費	3,900	○ 판넬 : 20개×10만원=2,000 ○ 說明文 : 50개×2만원=1,000 ○ '88補完 : 900 (上 3,000×3%)	○ 補助展示資料(陳列櫃 2.5개 當개) ○ 카드 및 小型說明板(陳列櫃)1개當1개)
收藏品圖錄發刊費	30,000	6,000部×單價 5천원 * 150日('86 : 60日+'88 : 90日) ×1日 40部=6,000部 * 단가에 編輯費 包含	○ 100面內外 原色圖版 ○ 多國語版(國・英・日・中・佛語等). ○ 2回 發刊('86.'88)
弘報費	4,120	○ 大型立看板 : 30만원×2개=600 ○ 懸垂幕 : 3 만원×4개=120 ○ 포스타 其他印刷 : 20만원×2回=400 ○ 紀念品 : 6,000개×500원=3,000 * 連開館日 150일×1日 40개=6,000개	○ '86.'88 各 1개 (校門) ○ '86.'88 各 2개 (博物館) ○ '86.'88 各 1回 ○ 弘報 및 來賓 接待用
特別管理人員費	7,500	5名×1만원×150日(連開館日)	警備員 : 2名. 案内員 : 3名.
豫備費	1,450	○ 展示品目錄 : 2만부×50원=1,000 ○ 雜費 : 150日×1日 3천원=450 ○ 研究教育費 : 2,700	○ 印刷部數 推算 ○ 博物館要員研修 및 案内員 專門教育
小計(1개校)	127,420		
總計	1,529,040	127,420×12개교	
備考 : 1. 參加校 名單 : 別表 1 大學別 展示參加計劃 参照. 2. 豫算의 具體算出 根據는 別表 3 豫算算出基準補完表 参照.			

〈別表 2-2〉

2. B 그룹

단위 : 천원

區分	豫算額	算出	內容
施設補完費	28,800	○ 陳列櫃補充製作費 : 20,500 ○ 環境調和設備費 : 5,800 ○ 保安施設費 : 2,500	○ 大 : 10개. 小 : 10개. 特殊 : 5개 ○ 照明. 溫濕度調節機 設置 ○ 赤, 紫外線警報施設 設置
遺物補強費	73,200	別表 3-2 豫算算出基準 補完表 参照	
展示遺物保存處理費	3,500	70點×5만원 * 基準展示量 450點×15%	○ 復元・修理・保存措置 ○ '86 : 10% . '88 : 5%
展示費	3,009	○ 판넬 : 20개×10만원=2,000 ○ 說明文 : 50개×2만원=1,000 ○ '88補完 : 900 (上 3,000×30%)	○ 補助展示資料(陳列櫃2.5개當1개) ○ 카드 및 小型說明板(陳列櫃)1개當1개)
收藏品圖錄發刊費	22,500	4,500部×單價 5천원 * 150日('86 : 60日+'88 : 90日) ×1日 30部=4,500部 * 單價에 編輯費 包含	○ 80面內外 原色圖版 ○ 多國語版(國・英・日・中・佛語等). ○ 2回 發刊('86.'88)

弘報費	3,370	○ 大型立看板: 30만원×2개=600 ○ 懸垂幕: 3만원×4개=120 ○ 포스타 其他印刷: 20만원×2회=400 ○ 紀念品: 4,500개×5백원=2,205 * 連開館日150日×1개30日=4,500개	○ '86.'88 各 1개 (校門) ○ '86.'88 各 2개 (博物館) ○ '86.'88 各 1회 ○ 弘報 및 來賓 接待用
特別管理人件費	7,500	5名×1만원×150日(連館室日)	警備員: 2名. 案内員: 3名
豫備費	4,150	○ 展示品目錄: 2만부×50원=1,000 ○ 雜費: 150日×1日3천원=450 ○ 研究教育費: 2,700	○ 印刷部數는 推算 ○ 博物館要員研修 및 案内員 專門教育
小計(1개校)	146,920		
總計	4,407,600	146,920×30개교	
備考: 1. 參加校名單: 別表 3 大學別展示參加計劃 參照. 2. 豫算具體算出根據는 別表 1 豫算算出基準 補完表 參照.			

〈別表 2-3〉

3. 特別企劃表

단위: 천원

區分	豫算額	算出	內容
施設補完費	24,100	○ 陳列櫃補充製作費: 15,800 ○ 環境調和設備費: 5,800 ○ 保安施設費: 2,500	○ 大: 6개, 小: 6개, 特殊: 10개 ○ 照明, 溫濕度調節機 設置 ○ 赤, 紫外線警報施設 設置
遺物補強費	36,600	別表 3-2 豫算算出基準補完表 參照	
展示遺物保存處理費	3,500	70點×5만원 * 基準展示量 450點×15%	○ 復元·修理·保存措置 ○ '86: 10%, '88: 5%
展示費	3,900	○ 판넬: 20개×10만원=2,000 ○ 說明文: 50개×2만원=1,000 ○ '88補完: 900(上3,000×30%)	○ 補助展示資料(陳列櫃2.5개當 1개) ○ 카드 및 小型說明板(陳列櫃 1개當 1개)
收藏品圖錄發刊費	30,000	6,000部×單價 5천원 * 150日('86: 60日+'88: 90日)×1日 40部=6,000部 * 單價에 編輯費 包含	○ 100面內外 原色圖版 ○ 多國語版(國·英·日·中·佛語等) ○ 2회 發刊('86.'88)
弘報費	4,720	○ 大型立看板: 50만원×2개=1,000 ○ 懸垂幕: 3만원×4개=120 ○ 포스타 其他印刷: 30만원×2회=600 ○ 紀念品: 6,000개×5백원=3,000 * 連開館日 150日×1日40개=6,000개	○ '86.'88 各 1개 (校門) ○ '86.'88 各 2개 (博物館) ○ '86.'88 各 1회 ○ 弘報 및 來賓 接待用
特別管理人件費	7,500	5名×1만원×150日(連館室日)	警備員: 2名. 案内員: 3名
豫備費	1,450	○ 展示品目錄: 2만부×50원=1,000 ○ 雜費: 150日×1日3천원=450 ○ 研究教育費: 2,700	○ 印刷部數는 推算 ○ 博物館要員研修 및 案内員 專門教育
小計(1개교)	114,470		
總計	1,259,170	114,470×11개교	
備考: 1. 參加校名單: 別表 1 大學別展示參加計劃 參照. 2. 豫算具體算出根據는 別表 3 豫算算出基準補完表 參照.			



〈別表 3-1〉

豫算算出 基準 補完表

1. 陳列櫥

단위: 천원

類 別	單 價	A그룹校	B그룹校	特別企劃展校
大 型(3m 基準)	1,500	6개 / 9,000	10개 / 15,000	6개 / 9,000
小 型(120cm 基準)	300	6개 / 1,800	10개 / 3,000	6개 / 1,800
特 殊 櫥	500	3개 / 1,500	5개 / 2,500	10개 / 5,000
合 計		15개 / 12,300	25개 / 20,500	22개 / 15,800

備 考: 1. 大學設置基準令(1967.9.27.)에 의하면 學生 2 千名 以下校 450m<sup>2</sup>(약 140坪), 그 以上일 境遇 600m<sup>2</sup>(近 200坪)의 展示室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文化올림픽 大學博物館特別公開展示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 水準 以上이 되어야 하는데 展示室 200坪의 경우에 所要되는 陳列櫥의 基準數는 아래와 같다.

大型: 20개      小型: 20개      特殊櫥: 10개      合計 50개.

2. 各大學 博物館의 現況에 비추어 上記 1에 대한 必要補完 比率는 아래와 같다.

○ A 그룹校: 30%

○ B 그룹校: 50%

○ 特別企劃展示校: 30%      단, 特殊櫥은 100%

2. 環境調和施設

○ 照 明: 200坪×坪當單價 1만원=2,000,000

○ 除 濕 器: 2台×台當單價 50만원=1,000,000

○ 풍에어콘: 200坪÷30坪(1台當 收容力)=7台×單價 40만원=2,800,000

3. 保安施設設備

200坪÷40坪(1台當 收容力)=5台×單價 50만원=2,500,000

〈別表 3-2〉

4. 遺物補強

단위: 천원

類 別	數 量 (點)	單 價	金 額
先史~三國(石器·土器)	110	300	33,000
金屬遺物	60	500	30,000
陶磁器類 遺物	100	600	60,000
書畫類遺物	30	1,000	30,000
民俗遺物	150	200	30,000
計	450		183,000

備考: 1. 上記 遺物種類 및 數量은 陳列櫥 50개에 展示되는 基準量임.

2. 위 1에 대한 各 그룹의 必要 補完比率

○ A그룹校: 30% (54,900)

○ B그룹校: 40% (73,200)

○ 特別企劃展校: 20% (36,600)

5. 收藏品圖錄

1日 40部所要, 算出根據는 弘報 및 貴賓 接待용으로 推算.

## 大學博物館關係法規 其他

〈別表 4〉

1. 大學設置基準令(檀紀 4288-1955-8. 4) 大統領令 1063號  
第10條(施設基準). 9. 博物館·科學館 其他의 附屬施設, 大學 또는 學科의 規模에 따라 適宜 設置한다.
2. 大學設置基準令(1967. 9. 27. 改正) 大統領令 第3226號  
第11條. 2. 綜合大學校에는 第8條 第2項의 規程에 의한 設備 이외에 다음의 基準에 의한 博物館·科學館과 其他 文教部令으로 定하는 附屬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① 博物館은 學生 2,000人 未滿까지는 450평방미터 以上, 2,000人 以上일 때는 600평방미터 以上으로 할 것.  
\* 單科大學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음.
3. 大學設置基準令(1970. 1. 9. 改正) 大統領令 第4511號 및 (1970. 1. 27. 改正) 大統領令 第4543號.  
第12條(條項만 바뀌고 內容 變動 없음)
4. 大學設置基準令(1982. 12. 31. 全文改正) 大統領令 第10983號 및 (1983. 6. 25. 改正) 大統領令 第11153號……現行의 것.  
第11條(附屬施設) 大學은 該當系列 또는 學科의 教育研究에 支障이 없도록 別表 3에 의한 附屬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別表 3에는 博物館이 舉示되어 있지 않음)  
\* 改正前 同令 第12條의 博物館設置 條項이 削除됨.
5. 國立學校設置(1977. 8. 30. 令全文改正) 大統領令 第8672號 및 (1982. 12. 31 改正) 大統領令 第11018號. “現行”  
第2章(大學校)  
第9條(敎務處) 2. 敎務處는 다음 事項을 分掌한다.  
⑥ 附屬圖書館 및 附屬博物館의 管理  
第11條(附屬施設) 1. 大學校에 다음의 附屬施設을 둔다.  
① 圖書館  
② 博物館  
第3章(大學) —單科大學—  
第21條(附屬施設)  
\* 單科大學에서는 博物館이 漏落되어 있음.
6. 서울大學校設置令(1970. 4. 8) 大統領令 第4870號 및 (1982. 6. 11 改正) 大統領令 第10835號……現行의 것.  
第6條(附屬施設) 1. 서울大學校에 다음의 附屬施設을 둔다.  
圖書館·博物館·保健診療所……
7. 서울大學校 博物館規程(1966. 9. 13 制定, 規則 第60號, 1983. 6. 13 改正 規則 第601號)……現行의 것.  
\* 全5章 21條로 되어 있음.
8. 1984學年度 學校法人 및 大學(校) 財政運營指針(1983. 12. 28. 文教部 示達)  
資金運營豫算計定科目, 明細表 支出의 部, 有形固定資産의 買入支出(1400) 博物館遺物 買入(1480)  
\* 學校博物館에 收藏할 遺物의 買入代金과 이의 附帶費用 등의 支出額(p. 37).

## “參 考”

- 上記指針中 圖書館 項目  
圖書購入金(1470), (p. 37).
- 上記指針 豫算編成基準 2. 一般基準  
마. 圖書費 確保 및 圖書館運營改善  
一. 勉學雰圍氣 改善을 위한 圖書館 運營改善  
一. 圖書確保(學生 1人當 2만원 以上 計上), (p. 9)  
\* 上記指針에 博物館關係 言及있음.

9. 以外 現在 政府次元에서 國民學校 및 中高等學校에 郷土館을 設置運營토록 積極 勸獎하고 있음.

[追記] 本 計劃案의 作成 및 그 提出經緯와 現在 制定推進中인 「博物館法」과 大學博物館과의 關係는 대략 다음과 같다.

- 1984年 2月 22日, 本人은 文公部 召集의 文化올림픽 行事推進主管機關選定會議에 本協會 協會長 資格으로 參席, 同行事에 大學博物館協會가 參與할 것과 이에 따른 計劃案 提出을 要請받았음(別添, 文公部 作成 「文化올림픽計劃」 抄錄 參照).
- 1984年 3月 14日 幹事校會議를 열어 그간의 經緯와 이에 대한 本人의 構想——즉 文公部原案대로 在京 몇몇 大學에서단 特別企劃展을 開催하는 方案과 이 大行事를 契機로 全會員校 參加 全會員校 育成이란 獨自的 方案推進——을 報告 協議한 끝에, 우선 각 幹事校에서 特別公開展示開催에 必要한 豫算試案등을 作成, 提出하여 再次 檢討키로 하였음.
- 1984年 4月 2日 다시 幹事校會議를 열어 幹事校(以外 淑大博物館에서도 特別協助)에서 提出한 豫算試案을 綜合 檢討하는 한편, 그간 이 作業과 關聯하여 會長校에서 調查 把握한 바 大學設置 基準令上에 博物館設置規定이 1982年 12月 31日附로 削除되었음을 確認하였음. 이에 文化올림픽 參加의 根本意義와 效果를 보다 高揚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大學博物館의 存立과 그 發展을 위해 本計劃案에서는 期必코 上記 方案中 後者, 즉 全會員校參加를 固守할 것을 決議하고 그 計劃의 具體的 作成과 提出을 協會幹事와 會長校에 一任키로 하였음.
- 1984年 4月 17日 그간 屢次의 提出督促을 무릅쓰고 作成完了한 本計劃案을 갖고 副會長校인 檀國大의 鄭永鎬館長과 本人이 文公部 許文道次官을 直接 禮訪, 面談 手交하고 이 計劃案에 따른 政府次元의 各種 支援과 이 直前に 發表된 博物館法 制定에 있어 大學博物館의 育成을 積極 反影해 주도록 要請하였음.
- 1984年 4月 21日字 한대박 제 84—7호로 上記 事實의 大略을 全會員校에 알리고, 이어 1984年 5月 11日 本協會 今年度春季總會(關東大學)에서 이 計劃案의 全文을 朗讀, 全員이 함께 內容을 檢討 補完하였음.
- 上記 本計劃案의 要月中 ○표한 部分은 項目의 表示가 아니고 政府提出用임을 勘案, 우리의 主場을 보다 表出키 위한 便法으로 記入한 것임. 그리고 本案作成에 있어서는 關係資料蒐集과

豫算算定등에 國民大學校博物館 學藝官補 張明洙氏의 勞苦가 多大하였음을 밝히고 깊은 謝意를 表한다.

- 本計劃案 提出直前인 1984年 4月 17日 博物館育成會 根本趣旨로 하는 文公部草案의 「博物館法」이 發表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把握에서 全國博物館數 77個中 大學博物館 51個가 66.2%의 絕對比重으로 把握되었고, 法案內容의 여러 條項에서 大學博物館이 本法에 의해 保護·育成받을 수 있도록 分明히 規定되어 있어서 크게 鼓舞的이었음.
- 그러나 1984年 6月 30日(土) 國會文公委 立法調查官 金文熙氏의 自進 電話通告를 받고, 本人은 7月 2日(月) 洪善杓 幹事(弘益大博物館 學藝官)와 함께 國會文公委 專門委員室을 訪問, 그곳에서 그간 博物館法案의 內容이 크게 變質되어 당시 곧 文公委에 上程할려는 「博物館法」에는 大學博物館은 勿論, 國立博物館마저도 그 範疇밖으로 밀려나, 그것은 可謂 私立博物館育成法的 性格의 것임을 確認하였음.
- 즉시, 그翌日 本人은 文敎部로 鄭熙彩 次官과 張炳圭 大學教育局長을 차례로 禮訪, 그간 文化올림픽 參에 따른 計劃案提出의 經緯와 各大學博物館의 어려운 現況을 說明하고, 특히 大學設置 基準令上의 還元과 博物館費配定의 行政的措置, 그리고 博物館法上 大學博物館의 位置確保등을 呼訴하였음.
- 다음날인 1984年 7月 4日(水) 緊急幹事校會議를 열어 (奏弘燮 名譽會員 特別招請) 그간의 經過를 報告하고, 早速히 特別對應活動을 展開키로 決議, 그 翌日 延世大 黃元九館長과 梨花女大 崔淑卿館長 및 本人은 國會文公委를 禮訪, 李潤子 李寧熙 李大淳 崔昌圭 李海元(委員長) 議員 및 專門委員 金容鈞氏등과 直接 面談, 教育 및 文化的次元에서의 大學博物館育成의 當爲性과 緊急성을 說明하고, 그런데로 大學博物館의 實情은 法規上 孤兒的存在(大學博物館設置基準令과 博物館法에서 共히 削除)인 정도로 어려움을 強調, 그 是正을 當부하였던 바 크게 好意的 反應을 얻었음.
- 博物館法은 當初 日程에 의하면 당시 開會中이던 臨時國會에 곧바로 上程通過시킬 豫定이었으나 國會內의 여러가지 어려운 事情으로 文公委에 조차 上程되지 못하고 後日을 기다리고 있음.
- 1984年 6月 18日에 本人은 다시 文公部要請으로 '86, '88' 文化藝術行事主管機關會議에 參席하여 大學博物館의 文化올림픽 參加計劃은 우리가 要請한바 政府次元의 政策的 措置가 이루어지지 않는 限 처음부터 砂上樓閣이며 空念佛임을 거듭 強調하였음.
- 8月 13日 文公部 管下 '86, '88 文化 올림픽 推進實務者가 來訪하였으므로, 大學博物館의 上記行事參與에 있어서 必須要件인 政府次元의 政策的支援이 早速 이루어질 수 있도록 相互協議 要請하였음.
- 後日의 參考를 위해 多少 장황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上記와 같이 現在까지의 前後經緯를 大略 追記하기로 하였음. (1984年 8月 15日).

別 添

## 文化올림픽計劃('83. 11. 文公部) 抄錄

### 1. 이 념

- 올림픽 문화예술사업을 민족사적 대약진의 체험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주체적 민족문화사의 형성에 금자탑을 세우며 세계문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우리 문화민족의 의지와 업적을 세계속에 객관화함.

### 2. 목 표

- 가. 민족문화의 중흥계기 마련(대내적)
- 나. 한국 민족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부각(대외적)

### 3. 기본방침

#### 가. 주 관

- 문화공부에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 올림픽문화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 조정, 추진.
- 관련기관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 체육부, 내무부, 교통부, 외무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국제문화협회, 언론기관, 민간문화단체.

#### 나. 성 격

- 한국문화예술의 소개에 중점.
- 국제행사 선별적 조직.

#### 다. 추진기조

- 국내 및 재외국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 체계적으로 총동원.
- 문화예술행사는 스포츠의 부수행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

#### 라. 조직의 방향

- 수준높은 문화행사에 국민적 동참기회를 부여하고 고급문화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및 한국문화의 대외진출 기회로 활용
- 전시는 우리문화 위주로, 공연은 국제프로그램과 병행토록 하며 대회기간중에는 우리문화위주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 민족기념비적 문화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 정비를 통한 주요 문화권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아늑하고 쾌적한 문화환경을 조성.
- 문화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전개.
- 문화예술행사는 예술부문 주요행사, 식전행사 및 올림픽시설행사, 기타행사로 구분, 실시.

#### 4. 문화예술행사 개요

##### 가. 기 간

###### 1) 대회기간

- 아시안게임 : 1986. 10. 3~10. 18 (16일간)
- 올림픽게임 : 1988. 9. 20~10. 5 (잠정기간)

###### 2) 문화행사 개최기간

- 아시안 게임
  - 공 연 : 대회기간중 중점추진
  - 전 시 : 대회기간 전후 3개월 중점추진
  - 국제행사 : 대회기간전 3개월내 중점추진
- 올림픽 대회
  - 공 연 : 대회기간중 중점추진
  - 전 시 : 대회기간 전후 3개월 중점추진
  - 국제행사 : 대회기간전 3개월내 중점추진

##### 나. 행사개최지

- 경기개최지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관광 및 사적지 : 경주, 제주, 부여, 공주, 청주, 진주

##### 다. 관람대상

###### 1) 아시안 게임

- 참가국 : 34개 회원국
- 참가인원 7,300명 (보도진 포함)
- 관광객 등 기타인사 : 150,000명
- 지방거주 국민 : 연 1,500,000명

###### 2) 올림픽 대회

- 선수인원 : 약 28,000명
- 관광객 등 기타인사 : 350,000명

##### 라. 행사일람

###### 1) 전시행사

- '86행사

번호	행 사 명	내 용
1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기념전	○ 국립박물관 소장작품 중 미공개작품 포함 선별전시
2	한국근대미술전	○ 한국정상급 작가의 작품전시
3	한국전승공예대전	○ 복공예, 초고공예, 금속공예 등 우수작 선정전시
4	한국도자기대전	○ 삼국에서 이조·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예작품 전시

5	한국풍물사진대전	○ 한국자연경관·풍물·민속 등 전통적인 소재의 사진 전시
6	한국복식전	○ 고대에서 이조·현대까지 한국의상발달사
7	신안유물도자기전	○ 신안인양유물중 우수작 선정전시
8	안압지특별전	○ 안압지발굴 유물중 문화재급 유물전시
9	대학박물관특별전	○ 대학박물관 소장품중 특성별로 전시

○ '88행사

번호	행 사 명	내 용
1	한국회화특별전	○ 삼국말에서 이조말까지 제작된 회화작품 전시
2	한국생활문화대전	○ 한국인의 전통적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전시회
3	한국서지 1,300년 전	○ 한국의 서지문화와 인쇄물을 체계적으로 입체전시
4	가야·황룡사지특별전	○ 가야·황룡사지 출토품중 선별전시
5	한국호랑이그림특별전	○ 한국상징의 호랑이 주제 그림 전시
6	한국도자기대전	○ 한국 . 국보급 도자기 총정리 전시(시대별 구분)
7	한국전승공예대전	○ 목공예, 초고공예, 금속공예 등 우수작 선정전시
8	백제문화특별전	○ 부여, 공주박물관 소장품 및 민간소장품 2,000여점전시
9	한국풍물사진대전	○ 한국의 풍물을 소재로 한 사진작품 300여점 전시
10	대학박물관특별전	○ 대학박물관 소장품을 대학별 특성별로 전시
11	한국현대미술전	○ 한국의 정상급 작가 선정, 회화·조각·판화·공예 등 전시
12	백남준비디오전	○ 교포작가 백남준 초청작품
13	전한국악기전	○ 한국 국악기 총집합 전시

5. 문화예술행사 계획

추진방침

- 고대에서 현대까지 한민족이 창조한 독창적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종합적 전시회를 중점 개최함.
  - 한국생활문화대전, 한국전승공예대전
- 스포츠 또는 올림픽행사를 주제로 한 행사를 발굴함.
  - 한국호랑이그림특별전
-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술계의 제 작업을 정리하여 소개함.
  - 신안유물특별전, 황룡사지 특별전
-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
  - 백남준 비디오전
- 민간, 대학박물관을 활용, 기관별로 특정 주제의 전시회 개최를 유도함.
  - 한국목가구 명품전, 한국수예 명품전

(86 전시행사)

6. 한국복식전

가. 목 적 : 한국의 의상문화의 방향과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문화민족의 우수성을 선양

나. 방 침 — 대학박물관 및 개인소장품 엄선

- 고중에 의한 재현작품
- 현장에서 직물 및 작품 판매 병행
- 행사기간중 2일정도 햇손쇼 병행

다. 세부계획

- 주 최 : 유관기업체
- 기 간 : 86. 10. 1~10. 20(20일간)
- 장 소 : 특설전시장
- 내 용 : — 의상의 역사
  - 수예품(문양)
  - 노리개
  - 장식(의상)
  - 직물 및 염색

○ 추진일정 :

- 84. 3~5.            기본계획 수립
- 84. 6~85. 12      전시물 선정 및 제작
- 86. 1~9.            전시장 준비

라. 소요예산 : ₩109,000,000 (민자)

- 작품제작비 : 14,000,000원
- 작품임대 : 15,000,000원
- 전시장준비 : 45,000,000원
- 인쇄비(도록) : 15,000,000원
- 추진비용 : 20,000,000원

7. 대학박물관 특별전시회

가. 목 적 : 각 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여 우리의 창조적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나. 방 침 : — 각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특성별로 전시

- 대학박물관 설치와 확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전국 대학박물관 협의회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전시계획 수립



다. 세부계획

- 주 최 : 전국 대학박물관 협의회, 각 대학교
- 기 간 : 86.9.1~10.31 (60일간)
- 장 소 : 각 대학박물관
- 내 용 : 각 대학박물관 소장품을 특색있게 주제별로 전시  
(예) 서울대—청동기전, 연대—선사문화전, 단국대—의상전 등
- 추진일정 58.5 : 전시계획 준비  
85.6~7 : 전시작품 조사, 확정  
85.7~12 : 예산확보, 전시작품수집, 목록작성  
86.5~6 : 홍보책자 배포, 도록 제작  
86.7~8 : 전시장설계, 전시장 장치, 전시물 배치  
86.9 : 전시회 개막

라. 소요예산 : 자체부담

(88 전시행사)

8. 대학박물관 특별전

가. 목 적 : 각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여 우리의 창조적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나. 방 침 : —각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특성별로 전시  
—대학박물관 특별전을 계기로 대학당국에 박물관 설치와 확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다. 세부계획

- 주 최 : 전국대학박물관 협의회, 각대학교
- 기 간 : 88.81~10.31(90일간)
- 장 소 : 각 대학박물관
- 내 용 : 유명대학교가 소지하고 있는 유물 2,000여점 내외를 주제별로, 특성별로 전시  
(예) 서울대—청동기전, 이 대—목가구 명품전, 단국대—수예 명품전
- 추진일정 : 87.3~4 : 세부추진계획 수립  
87.5~6 : 전시작품 조사확정  
87.7~12 : 예산확보, 전시작품수집, 리스트작성  
88.3~4 : 포스타제작, 도록제작, 안내팜프렛작성  
88.5~7 : 전시준비(전시장설치, 문화재설치)  
88.8~ : 전시회 개막

라. 소요예산 : 자체부담